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5. 4 선고 2021가단10298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이창훈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

담당변호사 서상원

변론 종결 2022. 3. 23.

판결 선고 2022. 5.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2019. 5. 8.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45,3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의 이혼 및 양육비부담조서의 작성

1) 원고는 1992. 3. 17. C과 혼인하였고, 2009. 12. 7. 창원지방법원 2009호1880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을 통하여 이혼하였다.

2) 원고와 C은 자녀로 D(E생)과 F(G생)을 두고 있었는데, 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이하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C은 원고에게, 이 사건에 따른 이혼신고가 되면,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750,000원을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3) 원고와 C은 2009. 12. 7. 이혼신고를 하였다.

나. C의 부동산 취득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

1) C은 원고와 이혼한 후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2) C은 2014. 6. 27.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9.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은 2021. 1. 19.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10호증,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초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C은 원고에게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H조합에 채권최고액

19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원고의 채권액인 45,3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를 상대로 C과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채권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은 원고에게 원고와의 이혼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자녀인 D과 F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7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양육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시효항변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구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부양료 채권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따라서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가정법원은 협의상 이혼절차에서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 양육비부담조서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민법 제836조의2 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채권은 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통상적인 금전채권에 해당하고, 민법 제163조 제1호(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민법 제165조 제2항은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그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기판력을 의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자녀인 D이 성년이 되는 2011. 7. 10.까지 및 F이 성년이 되는 2013. 11. 14.까지 매월 각 7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양육비 채권을 가진다 할 것이나, 한편 원고가 C에 대한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가 위 자녀들이 성년이 된 후로부터 각 3년이 경과한 2021. 5. 4. 이 법원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C에 대한 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와 C이 2019. 5.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전경훈

별지